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24
----------	------------

제안년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숲길’의 정의를 상위법을 준용하여 수정하고,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숲길” 정의 수정(안 제2조제7호)
-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영
제11조”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을
“영 제11조의7”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숲길</u>”이란 산림에 <u>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6. (개정안과 같음)</p> <p>7. “<u>숲길</u>”이란 <u>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u>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문</p>	<p>제3조(책무) <u>시장</u>----- -----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p>	<p>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u>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u>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u>산림문화·</u></p>

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5항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 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영 제11조

-----.

<신 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② -----

----- 영 제11조
의7-----

<신 설>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④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u></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u>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3조(책무) ----- ----- 법 ----- ----- ----- ----- ----- -----.</p> <p><u>제11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u> <u>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u> <u>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u> <u>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u></p>

<신 설>

<신 설>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영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